

부산고등법원 2015. 1. 20 선고 2014나4866 판결 [손해배상(기)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15. 1. 20 선고 2014나4866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4. 6. 26 선고 2013가합8741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변론종결 2014. 11. 25.

판결 선고 2015. 1. 20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가합8741 판결

주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2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9. 8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,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D은 같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, 1995. 9. 15.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"피고 L"을 "피고 C"으로, 제6면 제13행의 "증인"을 "제1심 증인"으로, 제9면 제3행의 "이 법원"을 "부산지방법원"으로, 제9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"이에 ~ 없다."부분을 아래 "○ 고쳐쓰는 부분" 부분의 기재내용과 같이 각 고치고,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 "○ 추가하는 부분"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○ 고쳐쓰는 부분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1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원고는, 별지 목록 제2, 3, 4항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는 원고 F 사후에 그 처리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을 제17호증의 1,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,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선장자들의 공동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향후 다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면 1995.경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있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상당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반면 피고들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 보이는 점, ② 원고가 피고측에 작성·교부한 각 각서(을 제17호증의 1, 2)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적어도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4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향후 원고 등이 분할협약을 거쳐 분배해야 할 상속재산이라면,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와 같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할 별다른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.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통하여 이를 원고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원고 F 사망 이후에 이에 관하여 새로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기로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.

】

【○ 추가하는 부분

한편 원고는, 원고가 작성한 각서(을 제17호증의 1)는 피고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른 원고의 몫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작성·교부한 것인데,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위 각서의 효력발생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만약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몫의 상속재산을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】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박중훈

판사이재욱

판사박재억

별지